## 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-18호

「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19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

## 1. 개정사유

은행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(안 별표2-13)

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, 이후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 본규제를 적용

나.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조정 (안 제102조)

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보다 완화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등 규제수준을 완화

## 3. 세부 개정내용

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'최근 제·개정 법규정보'를 참조

○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고시·공고·훈령